

보 건 복 지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부적정

기 관 명 사하구, 금정구, 강서구, 연제구

내 용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1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「보육사업안내」의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,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하는 조리원 배치¹²¹⁾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사하구 소재 ‘○○○○ 어린이집’ 등 4개 어린이집에서는 아래 【표】와 같이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음에도 감사일(2017. 02. 13.) 현재 조리원 배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.

121) 조리원 배치 기준: 현원(방과후 제외) 40~80인 1명, 81~160인 2명, 161~240인 3명, 241~320인 4명, 320인이상 5명

【표】 조리원 미배치 현황(2017. 02. 13. 기준)

(단위: 명)

구/군	어린이집 명	어린이집 유형	원장	현원 (방과후 제외)	적정 조리원 배치인원	배치 조리원 수	비고
사하구	○○○○ 어린이집	민간	○○○	91	2	1	1명 미배치
금정구	○○○○ 어린이집	민간	○○○	170	3	2	1명 미배치
강서구	○○○ 어린이집	사회복지법 인	○○○	266	4	3	1명 미배치
연제구	○○○○○○○ 어린이집	민간	○○○	93	2	1	1명 미배치

조치할 사항 사상구청장, 금정구청장, 강서구청장, 연제구청장은

[시정] 조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